(건축-001) ○○숙박시설 해체공사현장 붕괴사고

공사명	○○동 관광숙박시설 신축공사			
사고일시	2017년 1월 7일(토) 11:30분경		기상상태	맑음
소재지	서울시 종로구	사고 종류	무너짐(붕괴·도괴)	
구조물 손실	슬래브	인적피해	사망 2명, 부상 2명	
장비 손실	백호우	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대상 여부	해당(〇)	, 해당없음()

가. 사고개요

1) 공사개요

용도 : 숙박시설연면적 : 3,554㎡

규모: 지하 3층/지상 11층공사기간: 2016.10~2017.1

2) 사고경위

○ 호텔 리모델링을 위해 기존 건물(지하3층, 지상11층) 1층 바닥슬래브에서 백호우(버켓 0.6㎡)로 1층~3층 벽체 해체작업을 실시하던 중 1층 바닥슬래브가 붕괴되면서 백호우(운전자 포함)와 인근에서 살수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지하 2층~3층으로 추락 및 매몰

3) 사고원인

- 해체 대상건물 1층 바닥에 적재된 해체 잔재물 및 중장비(장비중량 14.5톤)의 하중을 바닥 슬래브 등 하부구조물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된 것으로 추정
- 철거 대상층 하부 슬래브의 하중지지용 잭서포트 미시공 또는 설치수량 부족 등 해체작업에 필요한 구조보강이 미흡했던 것으로 추정

나. 재발방지대책

- 해체공사 착수 전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발주청 및 인·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구조물 해체공사 전에 설계도면, 구조 계산서, 시방서, 공사비 내역서,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설계도서를 필히 작성하여 사전에 담당직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·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확인한 후 건물의 규모, 구조, 특징 등을 고려한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이 적정하게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.



사고현장 위치도





